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제정(안)

제정 2018. 9. 3.

제1조(목적)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창업대체학점제’에 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창업대체학점제’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창업동아리 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제3조(개설 및 편성) ① 창업대체학점제 중 창업실습은 1학기 및 2학기에 개설하며 편성내역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	개설학기
창업실습	일반선택	3학점	창업동아리 활동	15주 90시간 이상	P/N	1,2학기

② 창업대체학점제 중 창업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편성내역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공학점 인정은 스쿨·학부(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교과목명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	개설학기
창업현장실습Ⅰ	3학점	창업 후 창업활동	15주 600시간 이상	P/N	1,2학기
창업현장실습Ⅱ	3학점				
창업현장실습Ⅲ	3학점				
창업현장실습Ⅳ	3학점				
창업현장실습Ⅴ	3학점				

제4조(자격요건) 창업대체학점제를 신청할수 있는자는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본교 2,3,4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신청서 제출) 창업대체학점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실습 : 창업실습 신청서[별표1],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2.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별표 5], 사업자등록증,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별표 6],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제6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창업대체학점제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에서 공지한 기간에 관련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며, 창업교육센터에서는 명단을 교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창업현장실습교과목을 신청할 학생은 학과에서 교과구분 및 학점을 확인 받은 후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한다.

② 학점인정은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부여한다. 창업현장실습교과목 전공인정은 단일전공으로만 인정되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현장실습을 이수하는 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제7조(인정기준) 창업대체학점제를 통해 학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업실습의 경우 2인 이상(최대 10인 이내)이 창업동아리에 참여하고 본교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당 5회(월1회)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창업실습의 경우 창업실습 주차별 활동 일지[별표 2],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보고서[별표 3], 창업실습 결과보고서[별표 4], 지도교수 평가서[별표 10]와 시제품, 대·내외 입상 실적 등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교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당 5회(월1회)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창업현장실습 주차별 활동 일지[별표 7], 창업현장실습 월별 활동보고서[별표 8],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별표 9], 지도교수 평가서[별표 10]와 판매제품, 대·내외 입상 실적 등 창업현장실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점취득) ① 이 규정에 의한 창업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3학점이며,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15학점이다.

② 졸업 시까지 창업대체학점제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국내현장실습 및 해외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합산하여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장학금 지급)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국가 장학금 지급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실습포기) ① 창업실습교과를 이수중인 자가 수강포기 및 정정, 폐업, 휴학,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업실습 포

기 신청서[별표 11]를 즉시 창업교육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실습교과 포기에 따른 학사관련 및 등록금 관련사항은 “한림대학교 학칙” 과 “현장실습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준수사항) 실습생은 창업대체학점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한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인정기준 관련 제출서류 및 결과물을 본교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작 또는 위조하지 않아야 한다.
2. “한림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창업교육센터로 연락하여야 한다.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이 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